

진폐 [] 건강진단기관
[] 전문기관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즉시
신청인	(의료)기관명 (전화번호:)	
	소재지	
	대표자	
변경항목	변경 전	변경 후
변경사유 발생일		

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6항 및 제2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		
처리절차				
신고서 작성 신고인	→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(산업안전과)	→ 확인·검토 지방고용노동관서 (산업안전과)	→ 결재 지방고용노동관서 (산업안전과)	→ 통보